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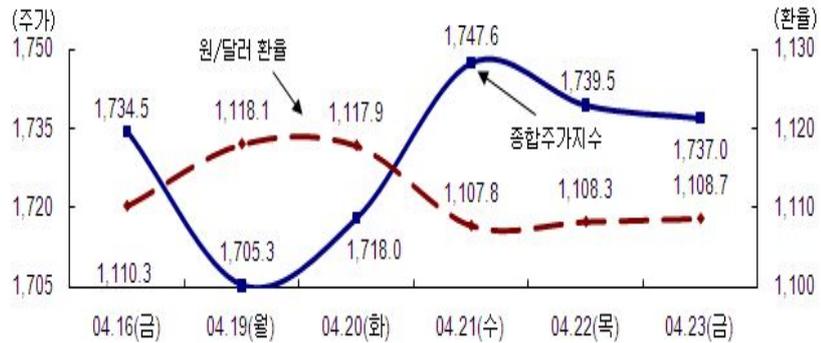
10-16(통권 396호)  
2010.04.23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16~4.2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	1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동 열 연구 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 ■ 사회적 기업의 성격과 위치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07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등 7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으며, 세금 감면, 인건비 지원, 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시장주도형 모델, 이태리와 폴란드의 공동체주도형 모델과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높은 인증요건과 많은 혜택을 지닌 정부주도형 모델로서,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0.03%(OECD 평균 4.4%)에 불과하며,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그쳐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한참 뒤져 있는 실정이다.

#### ■ 사회적 기업의 인증 현황과 문제점

(인증 현황) 2010년 4월 현재 289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얻어 활동하고 있으며, 시기별 인증 추이를 보면, 2008년12월 제6차 64개 인증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35개(46.7%)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권(45개, 15.6%)과 강원도(18개, 6.2%)가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반면 충청권(29개, 10.0%)과 대경권(20개, 6.9%)은 저조한 편이다. 업종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58개(20.1%), 환경 51개(17.6%), 간병·가사지원 40개(13.8%), 문화예술 19개(6.6%), 보육 16개(5.5%)의 순이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상법상 회사가 125개(4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비영리단체 55개(19%), 사단법인(17.6%), 사회복지법인 35개(12.1%) 등이었다. 사회적 목적별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제공형이 110개(44%)로 가장 많고,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을 동시에 하는 혼합형이 71개(28%), 순수한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33개(13%)에 그쳤다.

(문제점) 2007년 7월 시행 이후 짧은 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시행 4년째에 벌써 인증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 복지서비스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회사 형태가 가장 많아 초기에 상업성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목적별 분포를 보면 일자리제공형에 편중되어 있다. 넷째, 인증요건이 너무 엄격해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막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째,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사회적 기업이 법적·제도적 안정화라는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도약과 양적인 팽창을 통해 2단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정책적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줄여나감으로써 정부주도형 모델을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지원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자립성을 키워야 한다. 둘째, 경영대학원(MBA과정)에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의 육성과 (가칭)‘사회적기업투자펀드’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와 시장이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고유의 사업분야(Market Niche)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에 뿌리박은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을 늘리고,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이 필요하다.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

사회적 기업의 성격과 위치	
사회적 기업의 정의, 성격,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li> <li>-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성격</li> <li>- 높은 진입장벽과 많은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된 '정부주도형' 모델</li> <li>-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 0.03%, 매출액 비중 0.01%에 불과</li> </ul>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과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나 법인 등 공식 조직,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 참가, 수익금의 노무비 총당 30% 등 7가지 요건</li> <li>-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한하여 세금 감면, 인건비 지원, 시설자금 대여, 경영컨설팅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부여</li> </ul>

사회적 기업의 인증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3월말 현재 289개 사회적 기업</li> <li>- 총 10회에 걸쳐 655개 신청, 298개 인증, 9개 인증 취소</li> <li>- '08년12월 제6차 64개 인증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li> <li>- 지역별로는 서울 69개, 경기도 49개로 수도권이 중심을 이룸</li> <li>-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58개, 환경 51개, 간병·가사 40개 등</li> <li>- 상법상 회사 125개, 비영리단체 55개, 사단법인 51개 등</li> <li>- 일자리제공형 110개, 혼합형 71개, 사회서비스제공형 33개</li> </ul>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소 추세: 2012년 1천개 목표달성 어려워</li> <li>- 상업성 과잉: 상법상 회사 43%로 초기에 상업성 너무 강조</li> <li>- 편중된 목적: 일자리제공형 44%로 정부 고용정책에 밀착됨</li> <li>- 높은 진입장벽: 7가지 인증 요건 다 갖추기 너무 어려워</li> <li>- 낮은 자율성: 인증 기업의 인건비 직접 지원은 자율성 제약</li> </ul>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시사점 및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 인증요건과 지원 완화.</li> <li>- 사회적 기업가 양성프로그램 등 우수 인력 양성 지원</li> <li>-忍耐자본과 '투자펀드' 등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li> <li>- 사회적 기업 고유의 사업분야(Market Niche) 발굴</li> <li>- 지자체의 신용보증 지원과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의 확대</li> </ul>

## 1. 사회적 기업의 성격과 위치

□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 제도가 초기 정착 단계를 지나 질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함.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중간 점검해 보고, 향후의 2단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함

○ (정의)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sup>1)</sup>

-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sup>2)</sup>

○ (성격)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비즈니스기법과 경영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

- 이윤배반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한다는 점이 사회적 기업의 독특한 성격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그림 1> 사회적 기업의 성격



자료 : 정선희(2004)에서 재인용.

주1 : 이윤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고, 미션에도 사회적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

주2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1)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의 정의를 참고.

2) 1976년 설립된 미국의 사회적 기업 '루비콘 베이커리'의 사업 모토 중 하나. 루비콘은 장애인과 노숙자를 활용하여 조경과 제빵(베이커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

○ (인증 요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호칭을 쓰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7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해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와 시행령에 규정된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사회적 기업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稅制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①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비영리단체 등 법에서 정한 공식적 조직, ②유급근로자의 고용, ③사회적 목적<sup>3)</sup>의 실현,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정관이나 규약의 정비, ⑦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정부 지원) 사회적 기업에게는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는 법 제10조~14조의 조항에 근거하여 稅制지원, 인건비지원, 시설자금 대출, 사회보험료지원 등 혜택을 부여함

<표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

<p>○ 稅制지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기업</p> <p>※ 사회적기업: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기부기업: 소득의 5%범위 내 기부금의 손금 산입</p> <p>○ 人件費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p> <p>※ 2년간 인건비(월 78.8만원) 및 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p> <p>○ 專門人力지원: 전략기획·마케팅 등 전문인력 지원</p> <p>※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120만원, '08년 49억 원</p> <p>○ 資金지원: 사회적기업 설립時 시설·운영자금 貸付</p> <p>※ 1개소당 최대 4억 원, '08년 50억 원</p> <p>○ 經營諮問: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서비스</p>
--

자료 :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11.

3)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①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이상, ②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 ③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100분의 30이상이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의 서비스 수혜비율이 100분의 30이상.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은 '09년 1천885억 원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예산이 줄어 1,487억 원으로 감소함

<표 2>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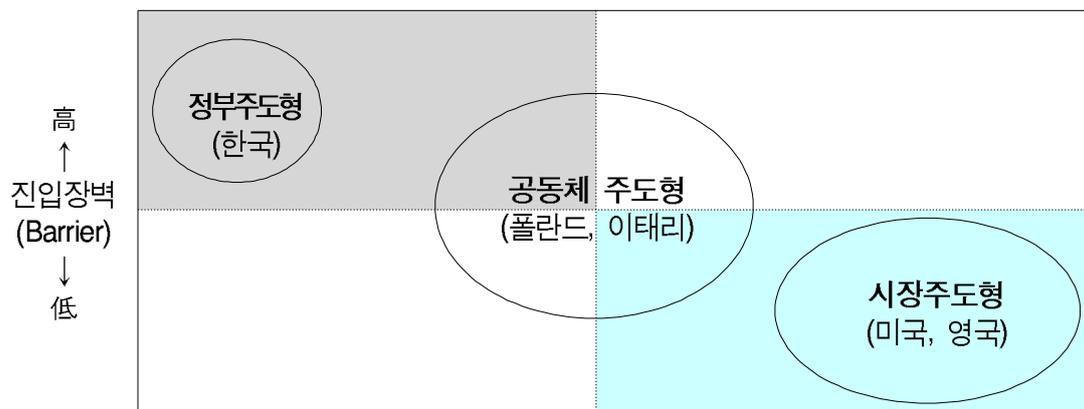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1,215	1,398	1,885	1,487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도 국가주요쟁점사업'(2009), '2010년 대한민국 재정'(2010).

- (사회적기업의 위치)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높은 문턱, 즉 인증요건(Barrier)을 충족하면, 많은 혜택(Benefit)이 주어지는 '한국형 모델'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시행 초기에 불과함
- 아래 그림과 같은 B-B 매트릭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소수의 인증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주도하는 '정부주도형' 모델이며,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도약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함

<그림 2>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위치 (B-B Matrix)

多 ← 혜택(Benefit) → 少



- 우리 사회적 기업은 이제 시행 4년째를 맞이하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며, 그 숫자(289개)나 고용 비중(0.03%), 매출액 비중(0.01%)도 매우 미미한 상태임

<표 3> 국가별 사회적기업 숫자 및 비중

구분	영국('06)	이태리('04)	프랑스('07)	독일('97)	폴란드('05)	미국('95)	한국('09)
기업 수 (개)	약55,000	약11,000	약8,400	약4,000	약52,000	약175,000	289
고용 비중* (경제활동인구中)	5%	5.2%	7.0%	3.7%	4.6%	6.3%	0.03%
매출액 비중 (GDP 대비)	2%	1.4%	-	-	-	-	0.01%

자료 : 조영복 외 (2009), 홍석빈(2009)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주1 : 국가별로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범위가 달라서 비교의 정확도가 높지 않음 .

주2 : 경제활동인구 中 사회적기업 고용 비중은 OECD 평균 4.4%.

주3 : 한국의 고용비중은 '09년8월 현재 총 유급근로자(7,228명)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것이며, 매출액 비중은 '08년 매출 추정액(465억 원)을 '08년 명목GDP(1,026조 원)로 나눈 것.

○ (서구 모델과 비교) 미국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경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유럽은 사회적 경제의 전통 하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사회적기업을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육성하고 있음

- 이태리('91년), 프랑스('02년), 핀란드('03년), 영국('04년), 벨기에('05년), 폴란드('06년) 등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 법률을 갖고 있으며,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정책을 통하여 지원함

<표 4> 유럽형과 미국형 사회적기업의 비교

	유럽형	미국형	한국형
제도적 환경	사회적 경제	시장 경제	정부주도형 시장 경제
강조점	사회적 기여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
조직형태	협동조합과 협회 중심	재단 등 비영리기관 중심	회사와 비영리기관 중심
활동의 초점	對人(Human) 서비스	수익창출 + 비영리활동	비영리활동 + 수익창출
정부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감면	자선단체/비영리기관에 조세 감면, 보조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인건비 지원
의사결정에의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 허용	제한적 인정	법적 허용
육성 주도	정부, EU, 민간기업	민간재단	정부
법적 프레임워크	미약, 개선中	취약, 부족	잘 준비됨
이윤분배	제한적 인정	원칙적 배제	제한적 인정 (1/3 이하)

자료 : 노동부(2008.11)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법적 형태를 보면, 영국은 공동체이익회사(CIC)법('04년) 및 사회적기업청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폴란드는 사회적협동조합법('06년)에 소득세·사회보험료 감면,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을 규정
- 조직 형태를 보면,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 조직 형태는 이태리, 폴란드 등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우세하며, 주식회사 등 상업적 모델은 미국,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음
- 재정구조를 보면, 미국 사회적 기업의 영업수익 비율이 57%로 가장 높으며, 영국 등 선진국은 45% 수준 (별첨. 표 1 참고)

<표 5>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특성 비교

구분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한국
출범배경 (시기)	복지 민영화 ('96년)	복지 민영화 ('97)	신규 복지수요 ('70년대~)	복지 효율화 ('90년대)	일자리 창출 ('03년~)
자원조달처 (거래유형)	시장 (판매)	시장 (판매)	사회 (기부/봉사)	정부 (업무 이양)	정부 (지원/보조금)
핵심기업 (조직형태)	기존 비영리기관 (재단)	신설 법인 (회사)	신설 법인 (협동조합)	신설 법인 (NGO)	기존非영리기관 (회사, 법인)**
니치마켓 (사업분야)	신규 서비스 (사회적 책임/윤리적 소비) (Bottom-Up)	신규 서비스 (복지서비스 민영화/지방화) (Bottom-Up)	기존 서비스 (홈케어/재가 복지/공공조달) (Bottom-Up)	신규 서비스 (정부서비스 민간 이양) (Top-Down)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Top-Down))
규모 / 범위	상당한 규모 / 다양한 서비스	상당한 규모 / 도시재생,사회통합,공공서비스전달	상당한 규모 / 분명한 지위, 제한적 서비스	소규모 / 제한적 서비스 (정부 중심)	소규모 / 제한적 서비스 (정부 주도)

자료 : Stephen W.K. Chiu('Three Worlds of Social Enterprise, 2006)를 토대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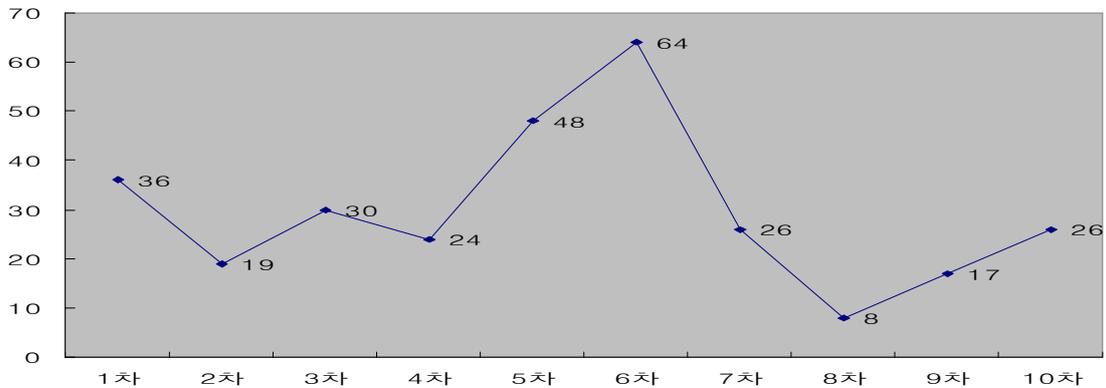
주 : 1. 이태리는 인력의 30%를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 공공조달의 20% 할애.

2. 한국의 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말하며,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말함.

## 2.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과 문제점

- (지정 현황) 2010년 3월말 현재 289개 사회적 기업의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시기별, 지역별, 유형별,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시기별) 먼저, 사회적 기업의 인증 추이를 보면, 2007년 7월 시행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8년 12월 제6차 64개 기업 인증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그림 3> 사회적 기업의 차수별 인증 추이



자료 : 노동자 자료에 의거 재작성.

-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모두 655개의 신청 기업 가운데 298개가 인증을 받아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 중 9개 기업의 인증이 취소<sup>4)</sup>되어, 현재 289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표 6> 사회적 기업의 연도별·차수별 신청, 인증, 취소 현황

(단위: 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사회적 기업	32	18	29	23	48	62	26	8	17	26	289
신청 기업	113	53	54	46	81	104	45	19	57	83	655
인증 기업	36	19	30	24	48	64	26	8	17	26	298
인증 취소	4	1	1	1	0	2	0	0	0	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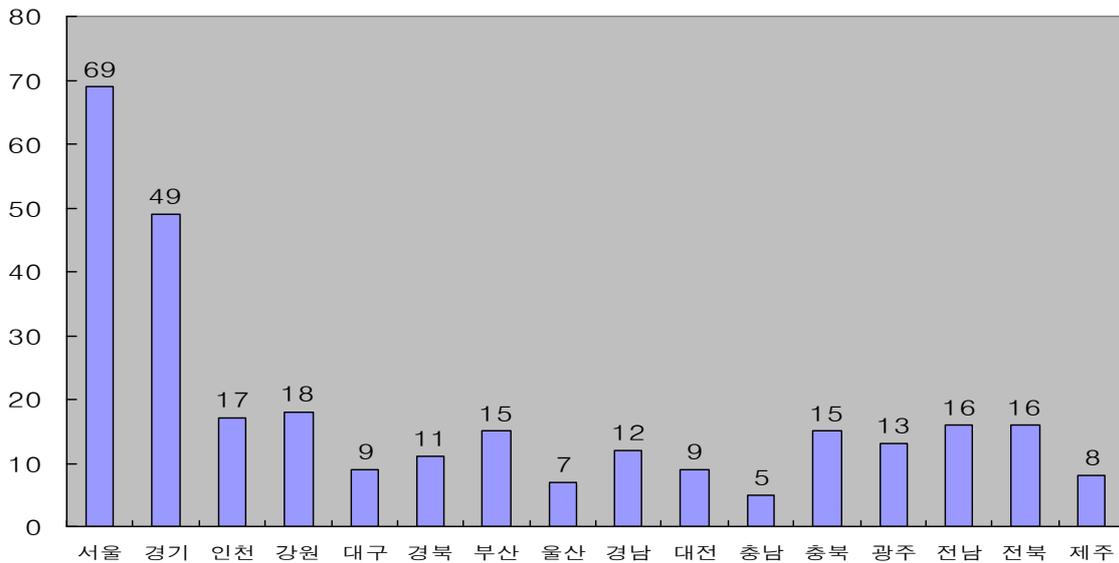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자료에 의거 재작성.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에 따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8조(인증요건 및 인증절차)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특히, 인증이 부여된 298개 기업의 3%에 해당하는 9개 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 사회적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별) '10년 3월말 현재 289개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인증 현황을 보면, 2010년 4월 현재 서울(69개)과 경기도(49개)가 중심을 이루고, 강원도(18개)와 호남권(45개)이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적 기업 활동이 활발함
- 반면,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이 10.0%(29개), 대구와 경북을 포함하는 대경권이 6.9%(20개)로서 비교적 저조한 편임

<그림 4>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분포 (2010년 3월, 289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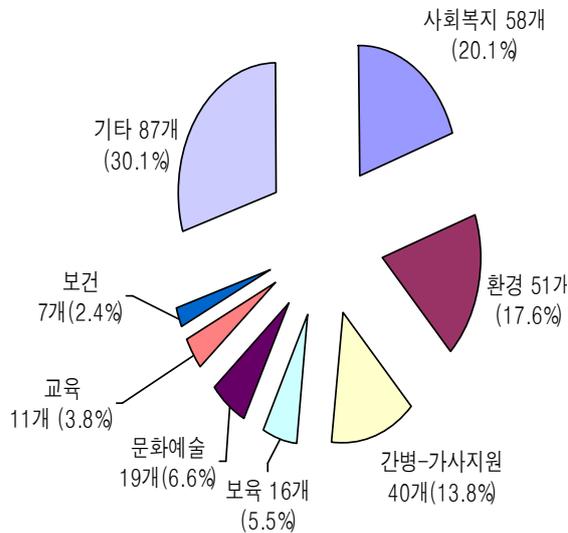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 노동부 자료에 의거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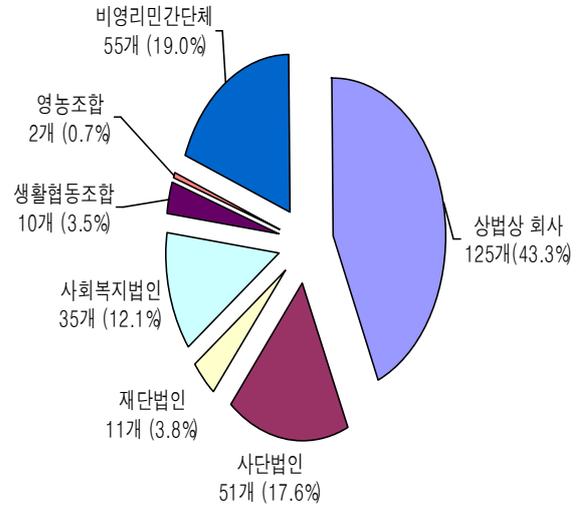
- (분야별) 289개 사회적 기업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8개 (20.1%)로 가장 많았고, 환경 51개(17.6%), 간병·가사지원 40개(13.8%), 문화 예술 19개(6.6%), 보육 16개(5.5%), 교육 11개(3.8%), 보건 7개(2.4%)의 順임
-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녹색성장 드라이브에 발맞춰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보육, 교육, 의료 분야의 사회적 기업 비중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음

<그림 5> 사업분야별 분포



자료 : 노동부 자료에 의거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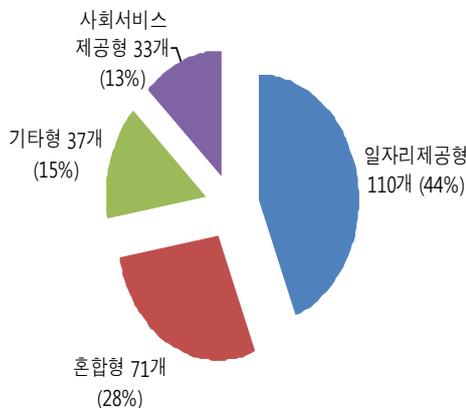
<그림 6> 조직형태별 분포



자료 : 노동부 자료에 의거 재작성.

- **(조직형태별)** 289개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별 분포를 보면, 상법상 회사가 125개(43.5%)로 가장 많고, 비영리단체(19%), 사단법인 51개(17.6%), 사회복지법인 35개(12.1%), 재단법인 11개(3.8%) 등의 順으로 되어있음
- **(사회적 목적 유형)** '09년 8월 현재 251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제공형이 110개(44%)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서비스 제공형 33개(13%), 혼합형 71개(28%), 기타형 37개(15%)의 順임

<그림 7>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별 분포



자료 : 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주 : 2009년 8월, 251개 기업 기준.

<표 7> 사회적 기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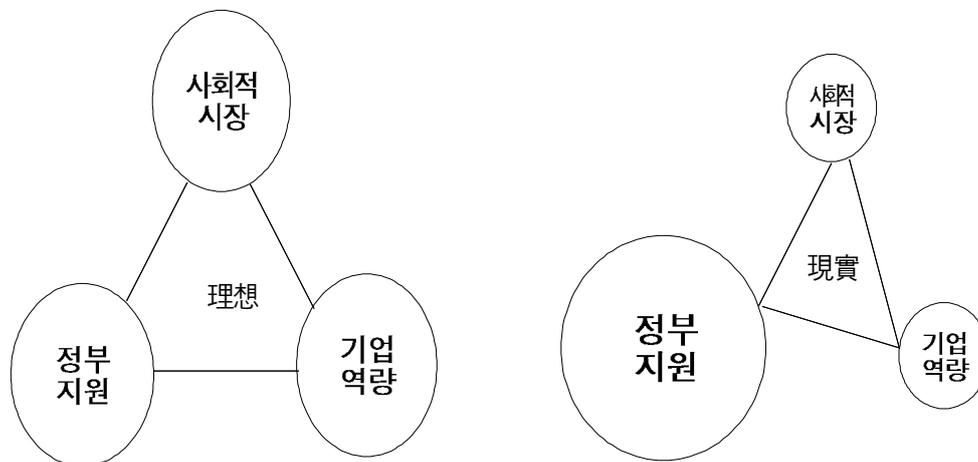
(단위: 명, 억 원)

업체명	근로자	취약 계층	매출	사업분야
노리단	54	1	15	공연예술, 재활용, 공공디자인
등천모자	63	40	22	모자, 카트리지, 자수품제작
워캔쿠키	57	38	12	우리밀쿠키제조
다솜이재단	227	132	20	재활간병, 치료간병, 말벗서비스

자료 : 노동부 (파이낸셜뉴스 2010.4.21 재인용).

- (장애인 시설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25개)과 노동부의 장애인표준사업장(8개)을 포함, 모두 33개(13%)의 장애인 시설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하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문제점)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적 팽창과 질적 발전이라는 2단계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음
- (핵심요소 불균형)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sup>5)</sup>는 ①사회적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고 자원을 획득하는 사회적 시장, ②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 지원, ③인력, 자금, 경영노하우 등 사회적 기업의 역량
- 우리의 現實은 기부와 봉사, 인식 등 여러 여건이 미흡하여 사회적 시장이 협소하고, 사회적 기업의 자체 역량이 취약한 상태이며, 정부 지원의 기능과 역할만 크게 부각되어 있는 불균형 상태에 있음

<그림 8> 사회적 기업 발전의 3가지 핵심요소



- (감소 트렌드) 사회적기업 신청 및 인증 추이를 보면 2008년 12월 104개 신청, 64개 인증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2010년 4월 현재 2단계 발전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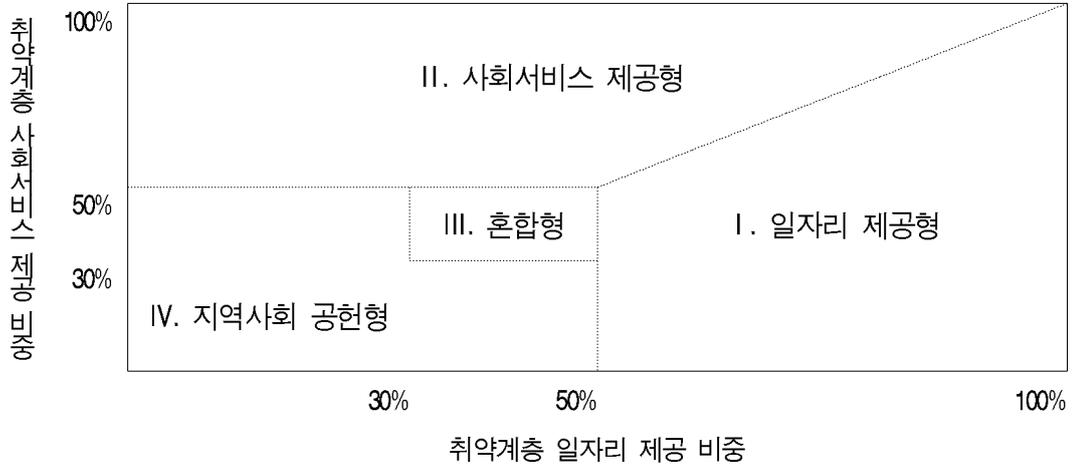
5) 美 하버드 경영대학원(HBS)의 '더치 레오너드'(Dutch Leonard)교수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 가치와 역량과 지원의 조화가 필요하며, 이 3가지 조건이 중첩되는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심상달 외(2008), p.108).

- 사회적기업 시행 4년째에 벌써 추세선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기업 제도에 대한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음
- **(상업성 과잉)** 사회적기업은 공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회사가 43%로 가장 많아, 태동단계에서 사회적기업의 상업성을 너무 강조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영화와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었던 영국, 미국, 북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복지서비스의 과잉이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업성의 지나친 강조는 우리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편중된 목적)** 노동부의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한 인건비 직접 지원에 의존하다보니 사회적목적에 있어서 일자리 제공형이 110개(44%)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너무 밀착되는 문제점<sup>6)</sup>이 드러남
  -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33개(13%)에 불과하며, 혼합형 71개(28%)를 합치더라도 41%에 그쳐, 고령화와 저출산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음
  - 노동부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사회적기업이 기여하도록 새로운 틀이 필요함
- **(높은 진입장벽)** 사회적기업의 7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취약계층<sup>7)</sup> 고용비율 50% 또는 취약계층의 서비스 수혜비율 50%와 같은 인증요건은 사회적기업의 창출과 다양성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태동단계에서 인증요건을 너무 좁게 잡은 까닭에 사회적기업의 활발한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2010년 3월말 현재 289개로서 당초 목표인 「2012년까지 1천개 육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음

6) 이태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2004년 말 약7천개 중에서 59%(4,026개)가 사회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타입이며, 33%(2,459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통합을 추구하는 B타입, 8%(377개)가 앞의 2개 타입의 혼합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Monica Loss(2008)).

7)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취약계층'에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성매매 피해자 등이 포함됨.

<그림 9>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자료 : 노동부(2008).

주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위 그림에서 I,II,III 유형에 속해야 함.

- (낮은 자율성)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자율성<sup>8)</sup>을 제약하는 장치로 작용
  -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을 감안한다면, 인건비 직접 지원 없이 사회보험료만 지원하더라도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것임
  - 높은 진입장벽과 함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자립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sup>9)</sup>

<표 8> 사회적 기업을 판별하는 9가지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1. 최소한의 유급 근로자 2.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리스크 부담 3. 높은 수준의 자율성 4.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판매활동 지속	5. 일단의 시민들이 조직·추진한 이니셔티브 6.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7. 구성원 1인 1투표권 (분담액과 투표권이 비례하지 않음) 8. 제한적 이익분배 9.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하려는 명시적 목표

자료 : Borzaga and Defourmy(2001).

8) 사회적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EMES의 9가지 요건 중 하나가 ‘높은 수준의 자율성’임.  
 9) 우리나라는 개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반면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육성하는 데에는 투자와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원영역이 과도하게 크고,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지머니(easy money)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으로써, 정부지원이 끊어지는 2,3년 뒤의 생존가능성을 보장하는 역량을 키워내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심상달 외(2008), p.108).

### 3. 정책적 시사점 및 5가지 과제

-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의 법적·제도적 안정화를 이룩했다는 1단계 성과를 토대로 질적인 도약과 양적인 팽창을 통한 2단계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 첫째,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점차 전환

-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우리나라는 초기의 정부주도형 모델에 속하며, 2단계의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도약을 위해 시장주도형 모델로 점차 전환해가야 함
  - 현재의 정부주도형 육성정책을 지속한다면,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사회적 기업은 2천개를 넘지 못할 것임. 영국은 279개('80년)에서 55,000개('06년)로 성장하는데 25년간 걸렸고 1년에 평균 2천개 이상 만들어짐.
  - 1998년 'IT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과 그 부작용을 교훈으로 삼아,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Barrier)을 낮추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혜택(Benefit)도 낮춰 '시장주도형' 모델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2단계 자생적 발전에 유리
  - 노동부의 인증업무를 공공기관으로 독립시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인건비 직접 지원 등의 지원 항목을 점차 축소하고, 취약계층의 수혜율과 고용비율도 점차 인하함
  - 사회적 기업의 팽창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제도에 대한 일몰시한을 도입하여 혜택의 수혜기간이 일정기한을 넘지 않도록 함

#### ○ 둘째, 경영대학원(MBA)에 사회적기업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등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임직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영대학원(MBA) 과정에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아쇼카'<sup>10)</sup>와 'SSE'<sup>11)</sup>와 같은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함

10) '아쇼카'의 창립자 빌 드레이튼은 세계 곳곳에서 잠재력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찾아내 3년간 금전적 지원(연간5만불)과 경영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했으며, 지난 2006년까지 아쇼카는 전세계 68개 국에서 1,820명의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6,500만불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다(심상달 외(2008)에서 재인용).

-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후 예일, 컬럼비아 등 다른 주요 경영대학원과 재단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다양한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함
- '아쇼카'나 SSE처럼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

○ 셋째, 사회적 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의 육성과 (가칭)'사회적기업 투자펀드'의 설립이 필요

- 사회적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며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의 육성이 필요하며, (가칭)'사회적기업 투자펀드'에 정부와 민간의 출연을 지원함
-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큐먼 펀드(Acumen Fund)<sup>12)</sup>는 록펠러재단, 빌 게이츠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하루 수익이 4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 물, 건강, 주택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비영리 벤처펀드
-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가칭)'사회적기업 투자펀드'를 구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증시 상장을 지원하는 프리보드, 사회적기업 전용 증권거래소 개설<sup>13)</sup>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도 검토

○ 넷째, 정부와 시장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기업 고유의 사업 분야(Market Niche)를 발굴하여 '사회적 시장'을 확충

- 외환위기 이후의 대량 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다수 참여했으나, 향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재가복지 활성화, 독거노인 지원 등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집중<sup>14)</sup>해야 함

11) SSE(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는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1997년 사회사업가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설립했다. 주1회 1년 단위 과정으로 진행되는 SSE 프로그램은 스스로의 성취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액션 러닝이라는 교육방식을 사용하며, 영국 전역에 지부를 개설하는 프랜차이즈 기법을 활용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십삼달 외(200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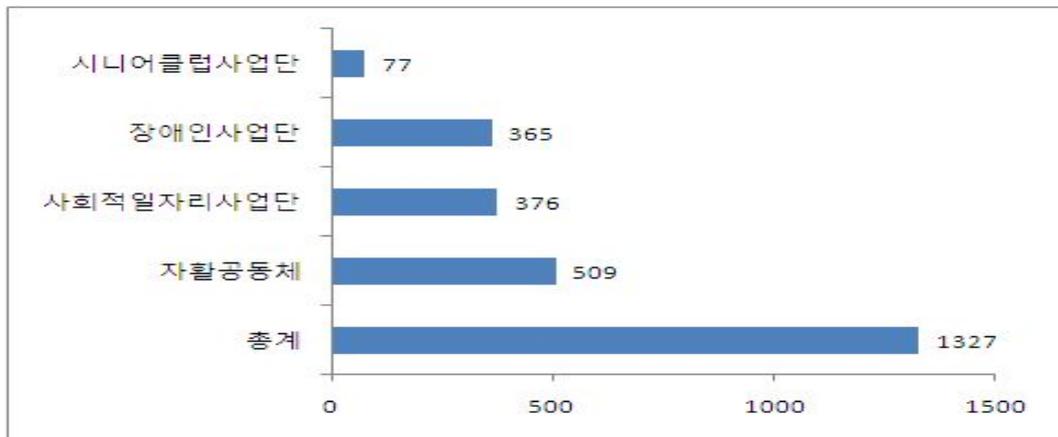
12) 2001년 재클린 노보그라츠(Jacqueline Novogratz)에 의해 설립된 아큐먼 펀드는 대표적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으로서 세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비영리 벤처펀드임. 저소득층에게 건강, 물, 주택, 연료를 감당 가능한 가격에 제공할 잠재력을 지닌 기업가들을 지원하며, 2012년까지 총 1억 달러를 투자하여 5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Molly Alexander(2009)).

13) 노회진(2010.4) 참고.

14) 이태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와 시장 사이의 마켓 니치(Market Niche)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꼽힌다. 노인, 가족문제가 있는 미성년자, 장애인 등에게 홈케어, 데일리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약중독자, 정신병자,刑집행정지자, 알콜중독자, 노숙자 등을 돌보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정부의 정책도 이에 맞춰 '일자리 지원' 예산의 비중을 낮추고, 새롭게 발굴한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함
- 이태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와 시장 사이의 마켓 니치(Market Niche)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대표적 사례이며, 노인, 가족문제가 있는 미성년자, 장애인 등에게 홈케어, 데일리케어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刑집행정지자, 알콜중독자, 노숙자 등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

<그림 10>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단



자료 :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현황 연구', 2007.

- 위와 같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많은 자활공동체와 장애인사업단 등 사회적기업 후보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함
  - ☞ 탄소배출 저감, 대체에너지 개발,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녹색성장전략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저출산·고령화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 등을 발굴함으로써 정부와 시장이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의 복지서비스 전달에 기여함

#### ○ 다섯째, 지자체의 신용보증 지원과 지역연계형 사회적 기업의 비중 확대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초기의 사회적 기업을 SK,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와 같은 기업연계형 사회적 기업의 높은 비중은 발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립형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중심을 현재와 같은 '대기업 연계형'에서 차츰 '지역연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community)의 발전과 부족한 사회복지를 보완해주는 제3의 시스템<sup>15)</sup>으로서 활성화함
-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기업용 자금을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이 그 출연금의 12배까지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지원함<sup>16)</sup>으로써, 지역사회에 밀착한 지역연계형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경제의 특성에 맞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김동열 (2072-6213, dykim@hri.co.kr)

15) 정부와 기업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제3섹터로 불렀으나, 사회적 기업과 이를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유럽에서는 흔히 제3의 시스템(The Third System)이라고 부름.

16) 마포구청은 지자체 최초로 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이 마포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신보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포구청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12배 가까운 자금지원 효과를 거뒀다. (한국경제신문, '마포구청 추천 기업은 신보 보증받는다', 2007.7.31 記事 참조).

< 참고 문헌 >

- 국회 예산정책처(2009),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기획예산처-숭실대학교(2006), 『사회적기업 재원조달 방안 수립 및 외국사례 연구』  
 노동부(2008),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노희진(2010),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지원 방안', [자본시장 Weekly 2010-14호], 자본시장연구원, 2010.4  
 박준(2009), '청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SERI 경제포커스 제272호  
 박찬임(2008),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8.10]  
 심상달 외(2008),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KDI  
 엄형식(2007),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현황 연구',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선희 지음(2004), 『사회적기업』, 다우출판사  
 조영복 외 율김(2009), 『사회적기업의 국가별 정책과 전략』, (사)사회적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09), '사회적 기업 국제컨퍼런스 2009' 보도자료, 2009.3.10  
 한상진(2008),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 전략', 노동사회 2008년4월  
 홍석빈(2009),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Alter Kim(2004),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LLC, September 2004  
 Borzaga, C. and Defourmy, J.(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New York  
 Defourmy, J.(2008), '확장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현실',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Aiken, M.(2008), '영국의 사회적 기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Alexander, M.(2009), '인내 자본(patient capital):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투자', KDI-컬럼비아 경영대학 공동 주최 「사회적 기업 국제컨퍼런스 2009」 발표자료  
 Loss, M. (2008),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Chiu, W. K. S.(2006), 'Three Worlds of Social Enterprise'  
 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go.kr](http://www.socialenterprise.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http://www.law.go.kr)

<별첨. 표 1>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국가별 비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체계와 육성전략에 따른 체계적 지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 산하 사회적기업청, '06년 사회적 기업 5만5천개)</li> <li>· 1997년 복지제도 민영화 이후 정부 서비스의 민간 이양, 사회적 기업 활성화</li> <li>·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법 제정, 간소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모델 창출</li> <li>※ CIC법 제정 2년이 경과되기 전에 2천여개의 CIC 설립</li> <li>· 다만, 동 법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장치 부재</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조직의 비즈니스 중심 상업성과 영리기업의 활발한 자선활동이 원동력</li> <li>· 농촌지역 협동조합(공동구매, 공동마케팅)과 종업원지주제도(ESOP) 지원</li> <li>· 1996년 복지제도 민영화 정책 이후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수익사업에 진출</li> <li>· 비영리부문의 전체 수입 가운데 수익금이 57%(선진국 45%)로 매우 높음</li> <li>· 자선기부금도 13%(선진국 7%)로 높으며, 정부지원금은 31%(선진국 48%)</li> <li>· 높은 수준의 자선기부금, 공공자선단체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li> </ul>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다수의 특별한 권리와 지위 누림</li> <li>· 1991년 유럽 최초 사회적기업 법제화('사회적 협동조합')가 기폭제 역할</li> <li>· 1970년대 후반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홈케어, 재가복지)에 협동조합이 대응</li> <li>· 사회적기업 부문의 조직적 유연성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li> <li>· 협동조합 연합기구인 '컨소시엄'을 활용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li> <li>· 稅制 혜택. 공장 폐쇄時 직원들의 협동조합이 기업 인수 가능</li> </ul>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 재단, 사회적 협동조합 중심(제3섹터). 분권화와 지방자치에 기반</li> <li>· 높은 실업률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창출의 원천으로서 사회적기업 지원</li> <li>· '03년 공익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법, 사회적 고용법. '06년 사회적 협동조합법</li> <li>· 협회와 재단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법적인 틀 구비</li> <li>· '바르카재단'과 '사회통합센터' 중심으로 국제네트워크 활용, 사회적기업 성장</li> <li>· 사회적 협동조합과 이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보조금 지급</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부문내의 조직간 통합 장려. 건실한 사회적 경제(전체 노동력의 7%)</li> <li>· 법적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다양한 조직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li> <li>·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구비</li> <li>· 이태리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참고로 '집단이익 협동조합(SCIC) 모델을 확충</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 및 협동조합(자조) 중심. 기업적 접근 보다는 복지기관적 접근이 우세</li> <li>· 사회적기업 지원의 動因은 실업 감소, 장애인 노동통합, 빈곤과 인종갈등 해소</li> <li>· 시장거래가 금지되는 한시적 근로제 도입 등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제약</li> <li>· 조직간 융합 및 혁신을 저해하는 법적·행정적 구조</li> <li>· 'CAP-Markte': 소규모 슈퍼마켓 연결, 전국적 브랜드화 (장애인을 2/3가량 고용)</li> </ul>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넓은 (사회적 목적기업과 자활지원기업을 포괄하는 방식)</li> <li>·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li> <li>· 재정적 혜택의 폭과 취약계층 고용률이 연동된 노동통합기업 지원</li> <li>※ 자활지원 사회적기업은 급여세(payroll taxes)를 면제(설립 첫해 100%, 다음해 부터 75%, 50%, 25%)받음.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40%→50%로 높여야</li> </ul>

자료: 노동부(2008), 조영복 외(2009)를 참고로 제작성

<별첨. 표 2> 사회적 기업의 분야별 국가별 사례

분야	국가	사례
對人 (Human) 서비스	오스트리아	Children's Group: 부모의 활발한 참여로 지원되는 보육 서비스
	프랑스	ACCEP(부모가 선두에 서는 보육조직): 일부 부모가 이끌고 관리하는 보육서비스로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
	영국	Home Care 협동조합: 파트타임으로 구성원을 고용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여성을 주로 고용함
	덴마크	Social Residence(사회적 주거): 불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존 기관의 대안으로 디자인된 주거 기관. 훈련 및 돌봄 서비스에 초점.
	스웨덴	FKU: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의 재활과 재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 단위의 지역개발 협동조합.
	이태리	A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보건, 교육, 훈련 또는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포르투갈	장애아동의 훈련과 재활을 위한 협동조합: 1985년 전국적 연합으로 통합되었다.
노동 통한 훈련과 통합	미국	루비콘 베이커리: 장애인을 고용하여 제빵기술을 가르치고, 빵을 판매
	벨기에	남부의 OJT기업과 노동통합기업, 북부의 노동통합기업과 사회적 워크숍: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하는 노동통합 기업은 시장지향성이 높고 장기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태리	B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개인의 노동통합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
	독일	재정지원을 일부 받는 시장지향적 사회적 기업: 기존 민간 기업이나 신생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장기실업자의 사회적·직업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룩셈부르크	환경, 농업, 건설, 쓰레기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및 경제적 활동을 통해 구성원에게 통합을 제공하는 협회(또는 노동조합):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이다.
	스페인	장애자 또는 실업자를 위한 노동통합 기업: 장기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타깃그룹을 기존 노동시장에 궁극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과도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개발	독일	CAP-Markte: 대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과 도시의 소규모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국 브랜드를 형성. 장애인을 2/3가량 고용
	핀란드	지역별 협동조합 개발 에이전시(CDA): 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은 그 구성원의 용역을 다른 기업으로 하청 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근로자 협동조합과 다르다.
	네덜란드	지역관리기업(NME): 근접서비스를 개발하는 독립기업으로, 쇠퇴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 인프라와 개인주택의 유지관리·개선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일자리 제공
	그리스	농장관광협동조합: 관광객이 오는 시골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세운 협동조합으로 숙박, 식사, 작은 공예품 서비스 제공
	아일랜드	지역공동체 개발기업: 사회적 주택, 노동통합, 신용조합, 근접서비스(proximity service)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 Jacques Defourmy(국제노동브리프, 2008)을 토대로 재작성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E)
	년	1/4	2/4	3/4	4/4	년	1/4	2/4	3/4	4/4	
미국	0.4	-0.7	1.5	-2.7	-5.4	-2.4	-6.4	-0.7	2.2	5.6	3.1
유로 지역	0.6	0.8	-0.3	-0.4	-1.9	-4.1	-2.5	-0.1	0.4	0.1	1.0
일본	-1.2	2.7	-4.4	-4.9	-10.3	-5.2	-13.7	6.0	-0.6	3.8	1.9
중국	9.0	10.6	10.1	9.0	6.8	8.7	6.2	7.9	9.1	10.7	10.0
한국	2.3	5.5	4.3	3.1	-3.4	0.2	-4.3	-2.2	1.0	6.0	4.5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4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4월16일	4월23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77	3.77	-p
	엔/달러	90.76	96.65	92.93	93.05	93.45	0.40¥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573	1.3230	-0.0343\$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1,019	11,134	115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1,102	10,914	-18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80	3.76	-0.04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10.3	1,108.7	-1.6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734.5	1,737.0	2.5p

주: 4월 23일 해외지표는 전일(4월 22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4월16일	4월23일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5.42	82.91	-2.51\$
	Dubai	36.45	71.85	78.06	84.41	84.06	-0.35\$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9.75	277.12	-2.6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